

1. 개정이유

한국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한국마사회법이 개정(법률 제19492호, '23.6.20. 공포, '24.6.21. 시행)됨에 따라 전자마권 구매 시 등록과 관련된 사항,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, 계좌 등을 등록해야하며(마사회법 제6조의4제1항), 이에 따른 등록장소, 기기 계좌 개설,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3조의2 신설)
- 나. 전자마권을 구매하기 위해 등록한 사람의 등록 취소 사항(마사회법 제6조의4제3항)에 대한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3조의3 신설)
- 다.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농식품부의 점검 및 평가 도입(마사회법 제6조의8)에 따라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, 실시주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3조의4 신설)
- 라. 전자마권 발매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마권과 구매권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경고문구 표기를 하기 위한 의무 규정 조항이 변경되어 인용 조항을 개정코자 함(제3조의2를 안 제3조의5로 변경 후 개정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 조문 대비표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00.00. ~ 00.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제3조의5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3조의2)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6조의3제1항”을 “법 제6조의10제1항”으로 하며, 제3조의2부터 제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등록 등) 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경마장, 장외발매소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본인이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의 명의, 기기, 계좌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신청자의 실명·연령 확인 및 본인 명의 등록
2. 전자적 형태의 마권(이하 “전자마권”이라 한다) 구매에 사용할 신청자 명의의 정보통신기기 등록
3. 전자마권 구매 및 환급에 사용할 신청자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 개설 또는 등록

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위해 신청자의 명의·연령 및 정보통신기기의 명의자 등에 대한 심사절차·방법은 마사회가 정한다.

④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법 제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

⑤ 전자마권 구매자에 대한 환급금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청자 명의의 마사회 전용 계좌로 지급하거나 마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.

제3조의3(등록 취소) 법 제6조의4제3항제4호에서 “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법 제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2.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
3. 본인 명의를 타인의 등록을 위하여 빌려준 경우
4. 그 밖에 건전한 경마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마사회가 인정하는 경우

제3조의4(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·평가) ① 법 제6조의8에 따른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
2.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 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
3. 법 제6조의6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
4. 법 제6조의7에 따른 전자마권의 불법이용 차단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점검·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마사회는 점검대상 연도의 6월 말까지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7월말까지, 연간 이행실적 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·평가 결과를 마사회로 통보하고, 마사회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등록 등) ① 법 제6조의 4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경매장, 장외발매소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본인이 방문하여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(이하 “신청자”라 한다)의 명의, 기기, 계좌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.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 <u>1. 신청자의 실명·연령 확인 및 본인 명의 등록</u> <u>2. 전자적 형태의 마권(이하 “전자마권”이라 한다) 구매에 사용할 신청자 명의의 정보통신기기 등록</u> <u>3. 전자마권 구매 및 환급에 사용할 신청자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 개설 또는 등록</u>

<신 설>

③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위해
신청자의 명의·연령 및 정보통신
기기의 명의자 등에 대한 검
사절차·방법은 마사회가 정한
다.

④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
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법 제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2.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를 거
부·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

⑤ 전자마권 구매자에 대한 환
급금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신청
자 명의의 마사회 전용 계좌로
지급하거나 마사회가 정하는 방
법으로 지급한다.

제3조의3(등록 취소) 법 제6조의4
제3항제4호에서 “그 밖에 전자
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
게 해치는 행위”란 다음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를 말한다.

1. 법 제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<신 설>

2.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

3. 본인 명의를 타인의 등록을 위하여 빌려준 경우

4. 그 밖에 건전한 경마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마사회가 인정하는 경우

제3조의4(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·평가) ① 법 제6조의8에 따른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

2. 법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 방안 이행에 관한 사항

3. 법 제6조의6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

4. 법 제6조의7에 따른 전자마권의 불법이용 차단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점검·평가는 매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마사회는 점검대상 연도의 6월 말까지의 이행실적 보고서를 7월말

<u>제3조의2</u>(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) ① <u>법 제6조의3제1항</u>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·2. (생략) ② (생략)	<u>까지, 연간 이행실적 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 <u>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·평가 결과를 마사회로 통보하고, 마사회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.</u> <u>제3조의5</u>(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) ① <u>법 제6조의10제1항</u>----- 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---	--